

정향효마을 시설운영규정(일부)

제11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제92조(계약기간)

-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,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
-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-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만료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수정요구 또는 해지의 통지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.<신설 2021.06.23.>
 1.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
 2.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- ⑤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<신설 2021.06.23.>

제93조(계약목적)

- ① 본 시설과 계약자간의 서비스 계약을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함으로써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,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여 최상의 서비스 제공 및 원활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③ 요양원이 보유한 시설, 장비, 인력을 활용하여 시설 생활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'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'(이하 "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<신설 2021.06.23.>
- 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.<신설 2021.06.23.>

1. 계약 당사자
 2. 계약기간
 3.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 4.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
- ⑥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(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)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<신설 2021.06.23.>
- ⑦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.<신설 2021.06.23.>

제94조(계약당사자)

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입소자가 치매 등으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을 때에는 법적대리인(보호자)이 계약 당사자가 된다.

제95조(구비서류)

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,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입소계약서(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- 동의서 포함)
2. 입소이용의뢰서(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)
3.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.
4.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.
5.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.
6. 신체구속동의서.
7.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.

제96조(계약해제)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본인부담금 등 납부해야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
-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③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④ 시설의 요양서비스에 간섭하고 본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,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할 때 계약의 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.

제97조(신원인수인의 의무)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
2.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통보 의무
5.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
6.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·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의 의무

제98조(신원인수인의 권리)

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2.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·전원할 수 있는 권리
3. 표준약관에 따라 입소자의 면회 및 외박·외출에 관한 권리
4. 입소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5.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6. 입소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연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7.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8.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9.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10.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, 퇴소(전원)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11. 시설의 협약·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제12장 이용료에 관한 사항

제99조(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)

- 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비용 및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 비용은 원장이 정한다.
- ②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정하며, 해당 이용료는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06.23.>
 - 가. 기초수급자 : 무료
 - 나. 기타경감자 : 본인부담금 8% 또는 12% + 비급여 항목
 - 다. 일반대상자 : 본인부담금 20% + 비급여 항목

※ 등급별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(매년 고시금액)에 의거 산정한다.
- ③ 비급여의 상세비용은 별도로 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

안내하고, 급여제공계약을 통하여 명기한다.

- ④ 입소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받은 기타 개인적 또는 특정서비스, 입소자의 시설 외의 치료 비용에 대하여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.

제100조(이용료 등의 납부) <개정 2021.06.23.>

- ① 이용료(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)는 월 단위로 계산하며, 서비스 개시 후 익월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. 요양보험수가 및 외박수가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르며, 식대비는 1식을 기준으로 한다.
- ② 이용료 납부는 “갑”이 지정한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01조(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및 절차) <개정 2021.06.23.>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 - 1.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
 - 2.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
 - 3.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
 - 4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을 변경할 때
-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.
 - 1.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.
 - 2.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.
 - 3.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.
 - 4. 비급여 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,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- 5. 비급여 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을 작성한다.
- ③ 비급여 비용, 기타서비스 비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법인 이사회에 상정하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
제13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

제102조(서비스의 내용)

- ① 본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- ② 수급자에게 일상생활보조를 위한 케어, 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③ 식단에 의해 1일 3식의 식사를 제공하며, 하루 1~2회 간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.
- ④ 계약의사와 간호(조무)사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,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다.
- ⑤ 입소자의 연령, 성별, 성격, 생활력, 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상담하거나 관찰·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·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병원 및 타 복지시설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⑥ 입소보호 업무 등을 함에 있어서는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- ⑦ 시설의 직원이 치매 및 중풍환자의 케어요령 등 치매환자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102조 1(보관금 관리) <신설 2024.10.04.>

- ① 분실도난의 예방을 위하여 입소노인은 귀중품 및 현금을 본 시설에 보관 의뢰할 수 있으며, 본인의 반환지급요청이 있을 때 본인의 서명날인 후 반환한다.
- ② 사망 등으로 보관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청구에 의거하여 지급한다.
- ③ 전항의 보관물품 및 보관금은 향후 1년간 경과 후 청구자가 없을 때와 무연고자로 판단될 때는 입소인의 유류금품은 장제비를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 재산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.

제103조(입소자의 권리)

- ① 존경과 존엄과 존재로 대우받고, 차별, 착취, 학대,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
-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(care)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
- ③ 개인적인 사생활과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
- ④ 우편,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
- ⑤ 정치적, 문화적, 종교적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
- ⑥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
- ⑦ 내.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
- ⑧ 시설의 종교에 강요받지 않고 어르신의 종교활동에 대해 보장 받을 권리
- ⑨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
- ⑩ 어르신의 정서적·신체적 학대로부터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
- ⑪ 시설 내.외부에서 개인적 활동,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
- ⑫ 서비스 이용, 일상생활, 입.퇴소,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

제104조(특별한 보호 및 비용) <개정 2021.06.23.>

- ① 입소자나 보호자가 특별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본 시설은 성심성의를 다하여 특별서비스를 제공한다. 입소자 개인을 위한 특별서비스일 경우 비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.
- ② 본 시설에서 제공할 수 없는 범위의 서비스를 입소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거부할 수 있다.
- ③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집중 관찰, 호스피스 요양보호가 필요한 경우, 격리 등의 집중요양이 필요한 수급자를 위해 특별요양실을 마련하여 제공한다.
- ④ 특별요양실의 이용대상은 아래와 같다.
 - 가. 감염성 질환의 의심 및 진단 대상자
 - 나. 호스피스 대상자
 - 다. 일시적으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대상자
- 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, 기타 개별적인 집중 요양보호를 위한 특별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- ⑥ 기타 특별요양실 이용대상 및 비용 등은 특별요양실 운영수칙을 따른다.